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공고 제2026 - 23호

서울특별시 강동구 자율방범대 및 외국인 치안봉사단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

「서울특별시 강동구 자율방범대 및 외국인 치안봉사단 지원 조례」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「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회의 규칙」제13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.

2026년 10월 2일

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의장

1. 제안이유

경찰관서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요청에 따른 특별방범활동 및 행사 안전지원 등에 필요한 활동비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자율방범대의 원활한 활동과 지역사회 안전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가. 경찰관서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요청에 따른 자율방범활동 수행을 위한 활동비 지원 근거를 신설 (안 제7조제1항제6호)

3. 의견제출

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·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0월 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[참조 : 의회사무국장, 서울특별시 강동구 성내로 55, 전화 : 02)3425-7388, FAX : 02)3425-7292, E-mail : tnk10@gangdong.go.kr]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가.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(찬·반 여부 및 그 사유)

나. 성명(법인·단체의 경우에는 법인·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), 주소 및 전화번호

다. 기타 참고사항